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1
년
1
1
월
1
7
일
~
(
수
)
·
주
간
제
4
6
호
·
통
권
제
1
5
4
5
호
·
중
합
소
득
세
·
중
간
예
납
세
액
·
단
부
·
안
내
·
구
독
·
보
물
3
0
0
0
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11/17 통권 1545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선진국(先進國)다운 선진국(善進國) 되어야

일괄제공 원스톱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한국과 OECD국가 등 외국과의 국제거래소득의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여부 >

| 사업활동종류 | 본국에서만 과세 (선진국 협약) | 타방국에서도 과세 (개도국 협약) | 국내세법 원천세율 (조세조약제한세율) |
|--------|--|-----------------------|-----------------------------|
| 사업소득 | 주로 본국 과세 | 고정사업장 귀속분 | 2% |
| 선박임대소득 | 주로 본국 과세 | 고정사업장 귀속분 | 2% |
| 인적용역소득 | 독립종속 주로 본국과세 | 실제 용역 제공지 과세 | 20% |
| 사용료소득 | 조세조약특별규정 | 원천징수 | 20%(약 15% 내외) |
| 이자소득 | 지급지국과세 | 원천징수 | 20%(약 15% 내외) |
| 배당소득 | 지급지국과세 | 원천징수 | 20%(약 15% 내외) |
| 부동산소득 | 지급지국과세 | 부동산소재지국 | 종합과세 |
| 양도소득 | 주로 본국 과세 | 특별규정 | 차익의 20% 또는 지급액의 10% 중 작은 금액 |
| 기타소득 | 지급지국과세 | 특별규정 | 20% |
| 고정사업장 | 지점, 판매장소 등 (단순구입, 저장, 보관은 고정사업장 아님) | 좌동 | 좌동 |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사전 증여가 사망상속보다 유리한 세법규정내용 10가지 제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10계명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재화나 용역 구매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함 (p.11)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5호 / 주간 46호

2021. 11. 17.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 한국과 OECD국가 등 외국과의 국제거래소득의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여부 | 표지 |
| 긴급시사해설 | 사전 증여가 사망상속보다 유리한 세법규정내용 10가지 제시 | 2 |
| CEO에세이 | 선진국(先進國)다운 선진국(善進國) 되어야 | 3 |
|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 계열사 간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당사 해외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퇴직 처리 후 당사 해외 법인에 지문 계약을 맺은 자의 과세여부 - 부가세 신고 시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여부 -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5 6 |
| 눈에 맞는 절세미인 |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7 |
| 매일 절세재무요점 | -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 변화 - 한·미·일 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대기업 기준) | 9 10 |
| 직장인 Survival |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10계명 | 11 |
|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62, 2021.03.09)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02, 2021.03.05) | 12 13 |
| 세정뉴스와 해설 | 11일부터 8개 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대리운전픽서서비스카드 등 | 14 |
| 마케팅 Tax consulting | 재화나 용역 구매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함 | 11 |
| 세무정보 |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 15 26 |
| 회계정보 | -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38 |
| 세무환율정보 |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4 |

사전 증여가 사망상속보다 유리한 세법규정내용 10가지 제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사전증여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사망 전 10년 이상 초과분은 합산 제외
2.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신고금액대로 합산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세가 점차 상승한다면 과거의 낮은 증여금액으로 상속 합산됨.
3. 사전증여는 수증자 별로 각자 나누어 계산하므로, 상속재산의 단일 통합 합산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4. 사전증여는 가족간 합의로 합리적인 증여 배분이 가능한 반면, 사망상속은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으로 합리적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간 불화 원인이 될 수 있음.
5. 사망상속은 사망전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모든 증여재산과 잔여재산을 통합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신고하므로, 더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6. 다주택 보유시 높은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1세대 1주택이 되도록 나머지 주택은 미리 사전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 사전증여하면 해당 재산이 자녀의 자금원천으로 재투자 가능하며, 해당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도 자녀의 종합소득으로 분산 과세되므로, 부모 소득으로 합산되는 높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인다.
8. 부모가 당초에 염가에 취득한 자산의 중간가격 증여시, 차액에 대해 양도세 대신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에 큰 차이가 없다.
9. 사전수증 받은 자녀의 수증 취득가액이 상승하므로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소된다.
10. 일반 사전증여 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 제외되지만, 가업증여로 세금혜택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에 영구 합산된다.

선진국(先進國)다운 선진국(善進國) 되어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대한민국이 선진국(Developed Country)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7월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그룹에 포함했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그룹에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프랑스·일본 등이 있는 선진국 그룹으로 바뀌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한국이 처음이다.

2020년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 큰 무역을 위한 원조공여국(AID for-Trade doner)이다. 대단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인가?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월23일 기자회견에 의하면 “지난 4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93% 올랐다”고 한다. 또 머서 ‘2021세계도시생계비조사’에 의하면 서울 식빵값은 세계1위, 생계비는 세계 11위에 달한다. 6월2일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가계부채증가폭이 G5(미·영·독·불·일)의 2.6배에 달한다. 기업의 GDP대비 부채 역시 한국(16.7%p)이 G5(14.9%p)보다 증가폭이 컸다.

사회에는 따뜻함보다 갈등, 분노의 기운이 강하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삶의질, 사회적 지원 등을 집계한 2021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발표한 걸 보면 한국의 국민행복 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다. 핀란드, 덴마크가 1, 2위이고 한국 뒤로는 그리스·터키가 있을 뿐이다. 노인빈곤율도 높다. 2018년 기준 43.3%로 OECD평균(14.8%)의 세배 수준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를 넘어 내집마련, 꿈·희망까지 포기한 N포가 대세인 한국이다. 경제적 성과가 증대한만큼 지속가능사회로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

부터 지적해온 한국의 정치·사회적 병폐가 뭐냐하면 3불(三不)이다.

첫째 불(不)은 불결(不潔)이다. 깨끗지 못함, 부패다. OECD국가중 꼴지반열이다.

둘째 불(不)은 불공정(不公正)이다. 판 자체가 뒤틀린 것이다. 그래서 온갖 곳이 부글부글 끓는다. 평상시 갈등의 극단적 상징은 자살이다. 세계1위 자살공화국이 바로 한국이다.

셋째 불(不)은 불질서(不秩序)다. 무질서(無秩序)는 위, 아래 모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불질서는 아래는 질서를 지키는데 위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국형 무질서다. 새로 만든 조어다.

세월호 사건을 보라. 선장과 그 일당은 일찌감치 배를 탈출했다. 꼼짝말라는 배의 마이크 안내방송으로 어린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3불을 깨야한다. 그래야 선진국(善進國)다운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다. 누가 먼저 청결과 공정과 질서를 지켜야 할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통 화 명 | 11월 5일 (금) | 11월 8일 (월) | 11월 9일 (화) | 11월 10일 (수) | 11월 11일 (목) |
|-----------------------|---------------|---------------|---------------|----------------|----------------|
| 미 달 러 (USD) | 1180.00 | 1185.20 | 1184.30 | 1178.40 | 1181.00 |
| 일 본 엔 (JPY) | 1036.54 | 1044.83 | 1045.79 | 1043.52 | 1037.01 |
| 캐 나 다 달 러 (CAD) | 947.45 | 951.62 | 951.59 | 947.46 | 945.41 |
| 홍 콩 달 러 (HKD) | 151.60 | 152.28 | 152.06 | 151.25 | 151.58 |
| 위 안 화 (CNH) | 184.40 | 185.21 | 185.15 | 184.36 | 184.81 |
| 유 로 화 (EUR) | 1363.14 | 1370.86 | 1372.31 | 1366.12 | 1355.73 |
| 호 주 달 러 (AUD) | 873.55 | 876.57 | 878.81 | 869.48 | 865.55 |
| 싱 가 폴 달 러 (SGD) | 873.33 | 877.76 | 878.85 | 874.54 | 872.94 |
|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 284.10 | 284.90 | 285.03 | 283.99 | 284.34 |

계열사 간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Q 당사는 계열사와 용역거래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내용 :

- 당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개선 활동(시제품 제작) 및 영업 업무 지원
- 당사에도 해당 팀들이 별도로 존재하나, 당사의 필요성에 의해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지원을 받고 있음
- 해당 계약은 별도의 이윤이 없이, 실비 정산만을 하기로 합의함
- 해당 판매 제품은 계열사(용역을 제공하는)와 전혀 상관 관계가 없음

2. 질의 :

- 당사는 해당 거래가 비록 이윤이 없더라도 당사의 목적에 의하여 진행 된 계약인 관계로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요청 사항이 잘못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A 계열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당사 해외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퇴직 처리 후 당사 해외법인에 자문 계약을 맺은 자의 과세여부

Q 당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법인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 후 다시 당사 해외법인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의 문의.
2.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

A 귀사의 소속 근로자가 퇴직후 해외 현지법인과 자문계약 체결후 다시 일을 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 등을 보아 국내에 다시 귀국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경우는 자문계약 체결하고 용역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여부

Q 당사의 매출 중에 구매전용카드매출로 발생한 금액이 5백만원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는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음에도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서식에 별도로 매출금액을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기재가 누락되었을 시 별도의 가산세가 있나요?

A 구매전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용반영되었으면 신용카드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Q 당사는 A회사에게 a제품을 판매하고 A회사는 a제품을 B회사로 판매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a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제품에 대해 클레임 대응을 하고 발생한 불량제품 운송비 및 제비용을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여부?

A 매출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클레임대응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고 일종의 배상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업체는 귀사에게 공문 등으로 클레임 대응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귀사는 공문 등을 근거로 배상이나 보상성격으로 해당 금액을 보내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바, 가급적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금융상품 가입 당시 아버지가 2,1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2,0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 \times 10\% = 10$ 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에 아들이 7,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7,000\text{만원} - 5,000\text{만원}$ (증여공제액) =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000\text{만원} \times 10\% = 200\text{만원}$ 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2,1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금융상품 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증가액인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

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 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

| 구분 | 공제액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5,000만원(2,000만원)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 구분 | 1997.1.1이후 | 1999.1.1이후 | 2003.1.1이후 | 2008.1.1이후 |
|------|------------|------------|------------|------------|
| 합산기간 | 5년 | 10년 | 10년 | 10년 |
| 공제액 | 5억 | 5억 | 3억 | 6억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 변화

| 구분 | 종전 | | 개정 |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서울 | 0.6~3.2% | ⇒ | 1.2~6.0% |
| 공정시장가액비율 | 90% | ⇒ | 95% |
| 2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9억원 | ⇒ | 11억원 |

화

■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는?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20%
- 손익통산 : 연간 손익통산 허용
- 과세최저한 : 연간 최대 250만원
- 신고납부 : 연1회 신고 · 납부(5월 1일~31일)
- 법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한 · 미 · 일 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대기업 기준)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 미국 | 일본 | 한국 |
|----------------------------|-------------------|----------------------|--------------------------------|
|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투자분 기준) | 최대 10% (0-10%) | 최대 10% (6-10%) | 최대 2% (0-2%) |
| 최저한세 제도 운영 | × (*17년 말 폐지) | × | ○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소득의 일정비율) | 80% | 50% (일부 기업은 100%) | 60% |
| 국외원천 배당소득 국내 과세 여부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 (일정 한도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

* 탄소중립,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거나,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100% 적용(*21년 신규 도입)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 연 소득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
|----------------------------------|-------|------------------|------------------|------------------|
| | | 연금저축 (A) | IRP (B) | 합계 (A+B) |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중 합소득 1억원 이하 | 13.2% | | | |
| 위 소득 기준 초과 | | 3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10계명

1. 그 분야에서 누가 최고인지를 먼저 찾아내라
그 사람의 업적들을 구해서 읽고 자기화 시켜라. 유명한 사람이 이름있는 제자를 길러내고 이름있는 선수가 수준급의 선수를 길러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 자신의 업적을 기록에 남기라
본인의 업적을 시각화 시켜라. 기록은 시각화의 가장 큰 밑거름이다. 가능하면 도표화 시켜라 컬러로 도색하고 그것을 보는 뇌가 자극을 받도록 해라.
3. 목표를 이루었을때 생기는 보상을 다 적어라
힘들때 보상들을 바라보면 큰 힘이 될 것이다.
4. 풀지에도 의미를 찾아라
승자는 언제나 달리는 도중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달리는 전과정에 의미를 두라.
5. 모든 정보를 흘려 보내라
본인의 정보를 강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퍼서 가져 가라고 하라.
6. 경쟁자를 만들어라
똥단배는 바람이 불면 나아간다는 원리를 이용하라.
7.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
골이 깊으면 산도 그 만큼 높다. 언젠가는 골에서 산꼭대기로 간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
8.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손을 대라!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제 스페셜리스트만이 사는 세상이 되었다.
9. 주기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라!
동일한 자료를 자기화 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기적으로 모아놓았다가 바라보는 것이다.
10. 남을 위해 서비스한다고 생각하라!
여러 사람에게 기쁨이나 힘을 주는 것으로 언제나 힘이 솟는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재화나 용역 구매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함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 사용 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62, 2021.03.09

질 의

- A법인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22)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9월 건물 착공을 개시하여 2020년 6월까지 분양활동을 하였으며
 - 2020년 7월 미분양분 및 분양계약 해지분(전체 분양건물 중 약 35%)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A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질의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한 건물 중 미분양분 및 분양계약 해지분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경우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

회 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한 건물 중 미분양 및 분양계약 해지 분에 대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대 사용하

는 경우,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기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7항에 따라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전자세원-810, 2021.02.18

질 의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194, 2021.02.18

질 의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중기법§ 2의 중소기업중 열거된 비영리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기령§ 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고 조특령§ 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30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비영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02, 2021.03.05

질 의

- 질의법인은 금속재 00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함)에서 제품을 생산중이며,
 - '21. 6월 수도권 밖에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함)을 임대하여 제1공장과 동일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22. 6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제1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밖 제2공장으로 이전에예정임
- 질의내용**
- 제2공장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제1공장을 1년 이내에 폐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면 제1공장을 폐쇄한 이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1일부터 8개 업종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 등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기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분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홈택스 안내창을 통해 게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휘발유 1당 164원·경유 116원 내려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매월 소득자료 제출, 막상 해보니 '척척'... 656만명분 제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함으로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1. 11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 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 착한 임대인, ③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 11. 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I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 5월, 성실신고확인은 '22.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준액 = $\left[\begin{array}{l} \text{전년도} \\ \text{중간예납} \\ \text{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확정신고} \\ \text{자진납부} \\ \text{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결정·경정한} \\ \text{추가납부세액} \\ \text{(가산세 포함)} \end{array} + \begin{array}{l} \text{기한후·수정신고} \\ \text{추가자진납부세액} \\ \text{(가산세 포함)} \end{array} \right] - \text{환급세액}$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 2. 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Ⅰ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Ⅰ

| | 고 지 세 액 | '21. 11. 30(화)까지 납부 | '22. 2. 3(목)까지 납부 (분납할 세액) |
|------|-------------|---------------------|-------------------------------|
| 사례 1 | 15,470,000원 | 10,000,000원 | 5,470,000원 |
| 사례 2 | 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 사례 3 | 35,450,000원 | 17,725,000원 | 17,725,000원 |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Ⅰ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Ⅰ

01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02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1.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

2.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3. 전자납부 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필요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 11. 30. (화)까지 납부하고,
-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 2. 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직권연장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21. 11. 30.)을 3개월 직권연장('22. 2. 28.)합니다.



| 구 분 | 지 원 대 상 | 제 의 |
|---------------------|--|-----------------------|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 ② 착한임대인 |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
|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숙박·음식·제조업 등 7.5억 원, ③ 서비스업 등 5억 원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붙임 3·4)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 2. 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 2. 3.(목)에서 '22. 5. 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 11. 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Ⅰ

- | | |
|-----------|---|
| 01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
| 02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검색 → 모바일 신청 |

Ⅲ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¹⁾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 '21. 1. 1.~6. 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1. 11. 30.(화)까지²⁾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1. 1. 1. ~ 6. 30.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업 종 | 직전 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 |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 5·6)

01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02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붙임 2)

붙임 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 § 65①)
 -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 76)
 -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1.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 § 123, 소칙 § 64)
 -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 § 68)
5. 중간예납기간 중('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 § 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 86)

붙임 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전자납부 (P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 |
| |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 신용카드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 |
| |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분납)도 가능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시간 : 2021년 11월 30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

붙임 4 -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 홈택스 첫 화면 제일 위의 「My홈택스」 버튼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 선택
- My홈택스에서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사업자)는 「고지」 선택
 - 납부기한이 '22. 2. 28.(월)까지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선택

붙임 5 - 중간예납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사유 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저장 후 다음이동
 6. 신고서 작성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신고/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3.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6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 | | | |
|----------|--|-----------|--------------|
| ① 상 호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성 명 | 김○○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주 소 |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 | | |
| ⑥ 사업장소재지 |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 | | |

| | | | | |
|----------------------|-----------------------|-------------------------|---------------|----------------------|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 예납세액 |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 고납부세액 | ⑨ 추 가 납 부 세 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
| | 500,000 | 1,000,000 | 0 | 1,500,000 |

| | | | | | | | | | |
|---|---------------------------------|---------------------------|--------------------------------|---------------------|---------------------------|-----------------------------|-------------------------|----------------------------|----------------------|
|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 ⑪ 중간예납기간(1 월~6월)의 종합소 득금액 | ⑫ 종합소득금액 연환산액 (⑪×2) | ⑬ 0월 결산금 | ⑭ 종합 소득공제 |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 ⑯ 산출세액 (⑮×세율) | 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⑯/2) | | |
| | 7,000,000 | 14,000,000 | 0 | 1,500,000 | 12,500,000 | 795,000 | 397,500 | | |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 | | | | 중간예납추계액 | | | |
| | ⑱ 감면 세액 | ⑲ 세 액 공제액 | ⑳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㉑ 수 시 부 과 세 액 | ㉒ 원 천 징 수 세 액 | ㉓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계 (⑱~㉒) | ㉔ 계 (⑰-㉓) | ㉕ 분납 할세액2 개월 이 내) | ㉖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
| | 0 | 70,000 | 0 | 0 | 0 | 70,000 | 327,500 | 0 | 0 |

⑳ 신고 사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㉔ 중간예납추계액
327,500 ÷ ㉕ 중간예납기준액
1,500,000 = 21.8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김○○(서명 또는 인)

신 고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
|------|----------------|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구분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
| 이자소득 | | 0 | | | 0 |
| 배당소득 | | 0 | | 0 | 0 |
| 사업 소득 | 부동산임대업 | 0 | 0 | | ① |
| | 부동산임대업 외 | 10,000,000 | 3,000,000 | | 7,000,000 |
| 근로소득 | | 0 | 0 | | 0 |
| 연금소득 | | 0 | 0 | | 0 |
| 기타소득 | | 0 | 0 | | 0 |
| 합 계 | | 10,000,000 | 3,000,000 | | 7,000,000 |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구 분 | |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
| 이자소득 | | 0 | 0 | 0 |
| 배당소득 | | 0 | 0 | 0 |
| 사업 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② | 0 | 0 |
| | 부동산임대업 외 | 7,000,000 | | ③ 7,000,000 |
| 근로소득 | | 0 | 0 | 0 |
| 연금소득 | | 0 | 0 | 0 |
| 기타소득 | | 0 | 0 | 0 |
| 합 계 | | 7,000,000 | 0 | 7,000,000 |

※ 작성요령

1.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21. 11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
 -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4년 동안 약 9조 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세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 대기업·대재산가 조사실적('17~'20년) : 총 5,039건, 9조 3,257억 원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 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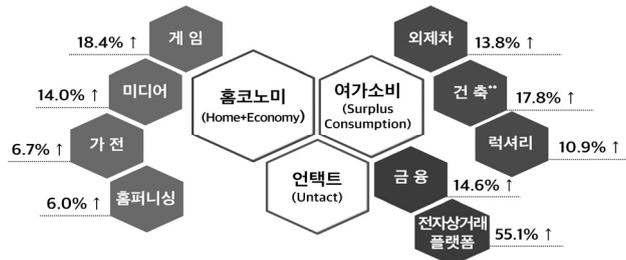
*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

- 이에 국세청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 '19년 → '20년 사이 외형 1,500억 원 이상 법인 중 56%가 매출이 감소한 반면, 조사대상 업체 중 호황업종의 경우 약 15.5% 매출 증가

-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및 수혜업종의 매출증가 추이*



* 각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를 샘플링하여 '19년 → '20년 간 매출 증가율(평균 값)을 산출

** '20년 종합건설업 조사 결과(대한건설협회 주관) 건축공사 부문 계약액 증감률(잠정) 발회

II 조사대상 탈세혐의자 현황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①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②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③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입니다.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 합 계 | ①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고액 급여·상여 및 기업자산 유용 | ② 자녀 재산증식기회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 ③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금융상품·변칙 자본거래 |
|-----|---|---|------------------------------------|
| 30명 | 12명 | 9명 | 9명 |

- 금번 조사대상 업체는 '19년에서 '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 (평균 7,063억 원 → 평균 7,514억 원) 하였으며,
-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 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하였습니다.

☞ 사주일가 재산 소유 현황

| 구 분 | 세대별 재산보유 현황(억 원) | | |
|---------|-------------------|-------------------|----------------|
| | 합 계 | 부모세대 | 자녀세대 |
| 2020년 | 9조 3,095 | 6조 7,488 | 2조 5,607 |
| 2016년 | 7조 1,535 | 5조 3,110 | 1조 8,425 |
| 증감(증가비) | 2조 1,560 (130.1%) | 1조 4,378 (127.1%) | 7,182 (139.0%) |

[탈루 유형 ①]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12명(사례 ①②③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입니다.
- * (부당급여 판정)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사치성 재산 보유 내역

| 슈퍼카·요트 등 | 고가 주택·별장 | 고가 회원권 |
|----------|----------|----------|
| 141억 원 | 386억 원 | 2,181억 원 |

* 재산별 최고가액: ① 차량 등: 독일 産 리무진(시가 7억 원), ② 주택 등: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시가 84억 원), ③ 회원권: 콘도 회원권(시가 26억 원)

[탈루 유형 ②]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9명(사례 ④⑤⑥ 참조)

- (요람회사* 부당지원)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사물의 처음 발생지 또는 근원지를 일컫는 말로 경영권 편법승계 원천기업을 의미
- (불공정 부동산무형자산 거래)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하였습니다.

☞ 사주자녀 재산증가 추이('16~'20년)

(연령별재산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 10대 | 주 식(508.2%) | 금 용(373.7%) | - | - |
| 20대 | 부동산(202.5%) | 주 식(160.1%) | 금 용(151.9%) | - |
| 30대 | 주 식(290.4%) | 부동산(185.1%) | 금 용(116.2%) | 기 타(100.0%) |
| 40대 | 금 용(205.7%) | 부동산(158.6%) | 기 타(125.9%) | 주 식(103.2%) |

* 기타재산 :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 (의미) 10대에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 돈을 증여 받고

20대에 일감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30~40대에는 고액급여·배당을 통해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양상

* 주식·금융재산(종잣 돈) → 부동산·주식(투자이익) → 금융재산(고액급여·배당 등)

[탈루 유형 ③] 증권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9명(사례 ⑦⑧ 참조)

-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이 콜옵선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하였습니다.
- (불공정 역외탈세)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하였습니다.



☞ [참 고] 콜옵선부 전환사채 소개

- 콜옵선*부 전환사채는 '13. 10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 발행이 금지된 직후 처음 발행되어, 기업 사주일가가 경영권 강화 등에 악용
 -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대주주 등)가 CB 일부(30%~50%)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 발행법인의 대주주가 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매수할 수 있는 사채로, '13.8월 대주주 사익편취(지분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발행 금지
- 현재 콜옵선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340여 개*로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선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부여한 사례 선별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
 - * 금감원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전체에서 웹크롤링 기법(웹에 존재하는 특정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수집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콜옵선부 전환사채 발행여부를 확인
 - ** '17~'21. 10. 26. 사이 콜옵선부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약 6조 원 가량으로 파악(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III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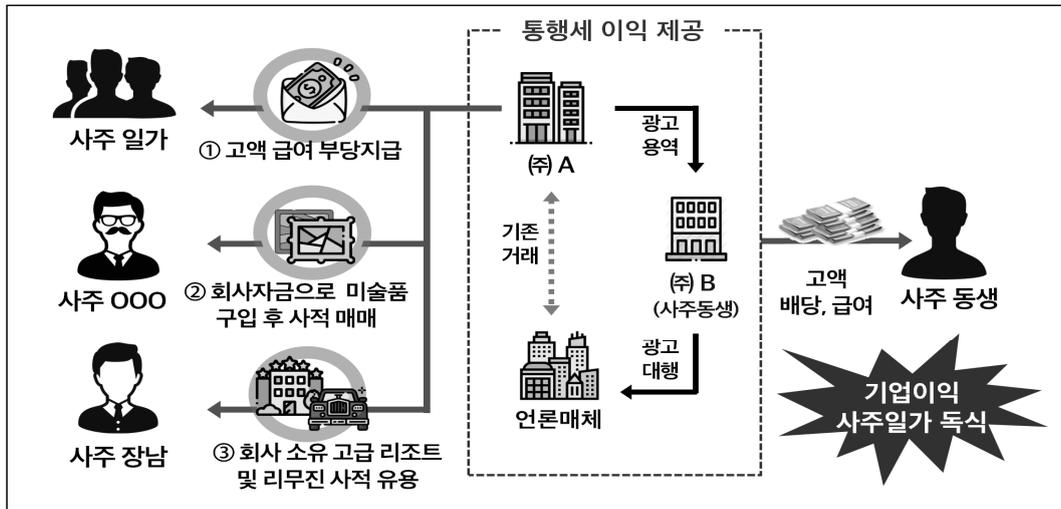
- 앞으로,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사례 ①]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동생 회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 주요 혐의내용



-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객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무진을 사적 제공
 -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00억 원)을 회사에 전가
 -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00억 원)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
-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객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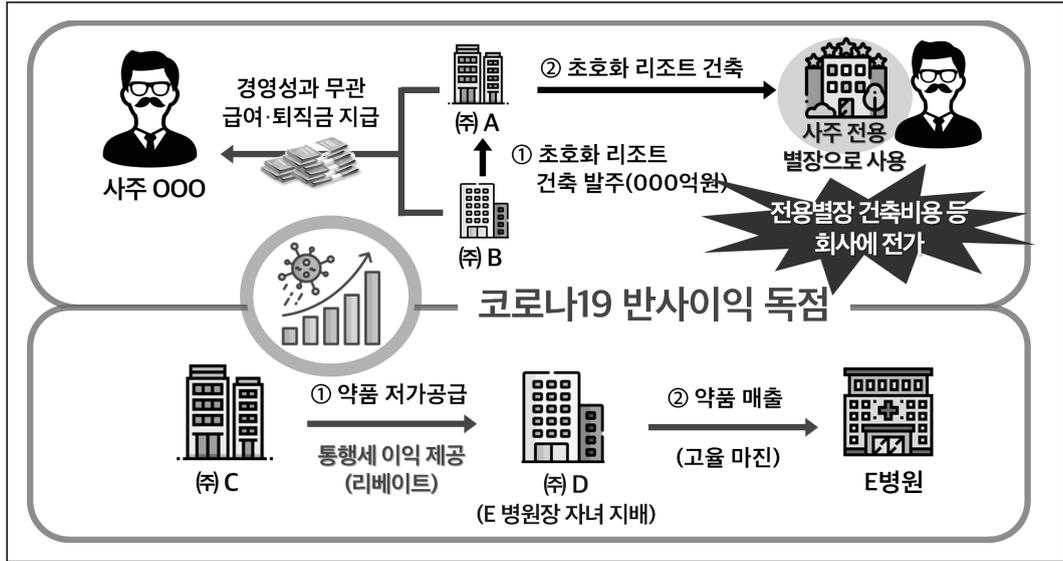
● 조사방향

-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②]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거래처인 병원장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 제공

● 주요 혐의내용



- (상단 사례)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A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
 - * 사주 급여 : 年 00억원 내외(비교 : 대표이사 年 5~6억원), 사주 퇴직금 : 000억원
 - 또한, 사주는 계열사 B가 000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
- (하단 사례) 이와 별도로,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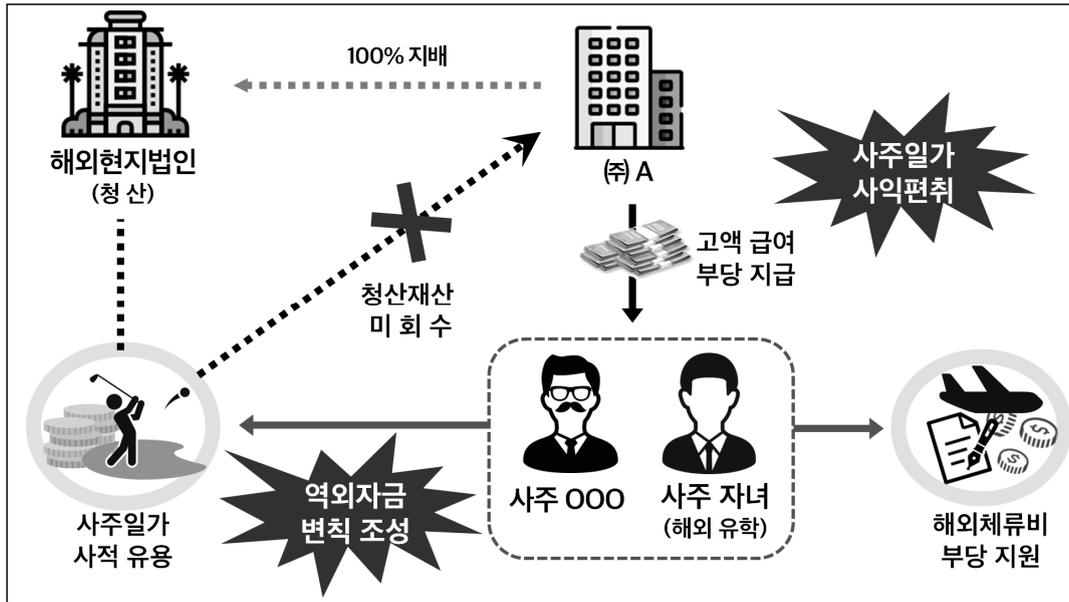
● 조사방향

-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법인자산 사적사용 및 통행세(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③]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현지법인 청산자산인 골프회원권을 미회수하여 사적유용하게 하고 유학중인 사주자녀에게 거짓급여 지급 등 기업이익 독식(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고액 급여 (00억)를 수령
 -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 또한,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골프회원권(00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하였으며,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 고액을 지급(0억)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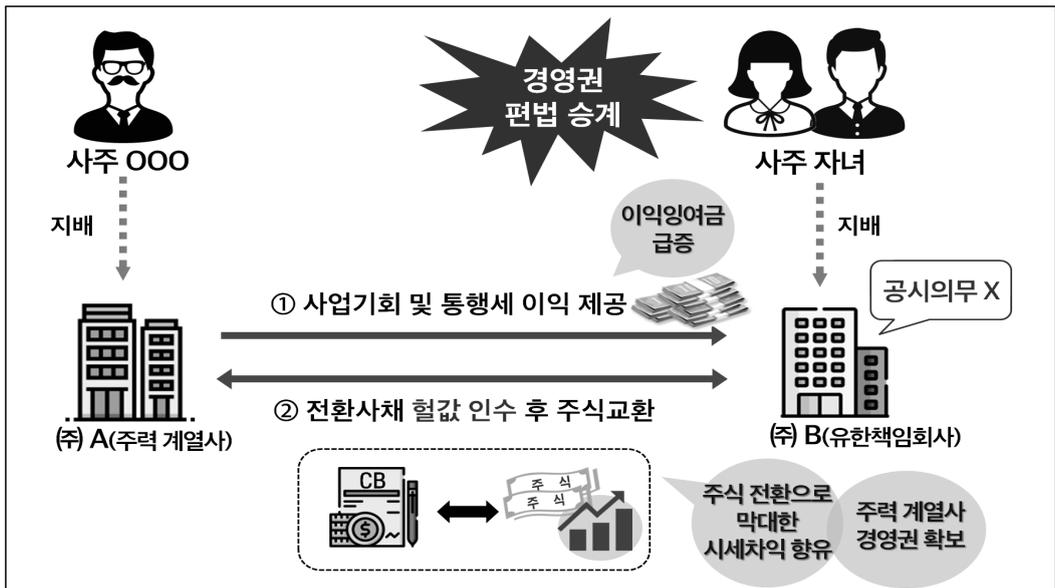
● 조사결과

- 사주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④]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한 후 이를 원천으로 주력 계열사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여 경영권 편법승계(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그룹 주력사인 A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기회를 제공
 - 이와 관련, 사주 자녀는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등 내부거래 관계를 감추고 실제 주요 업무는 A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 이익(000억)을 부여 받은 혐의
- 또한, B사는 A사로부터 부여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부당이익 00억)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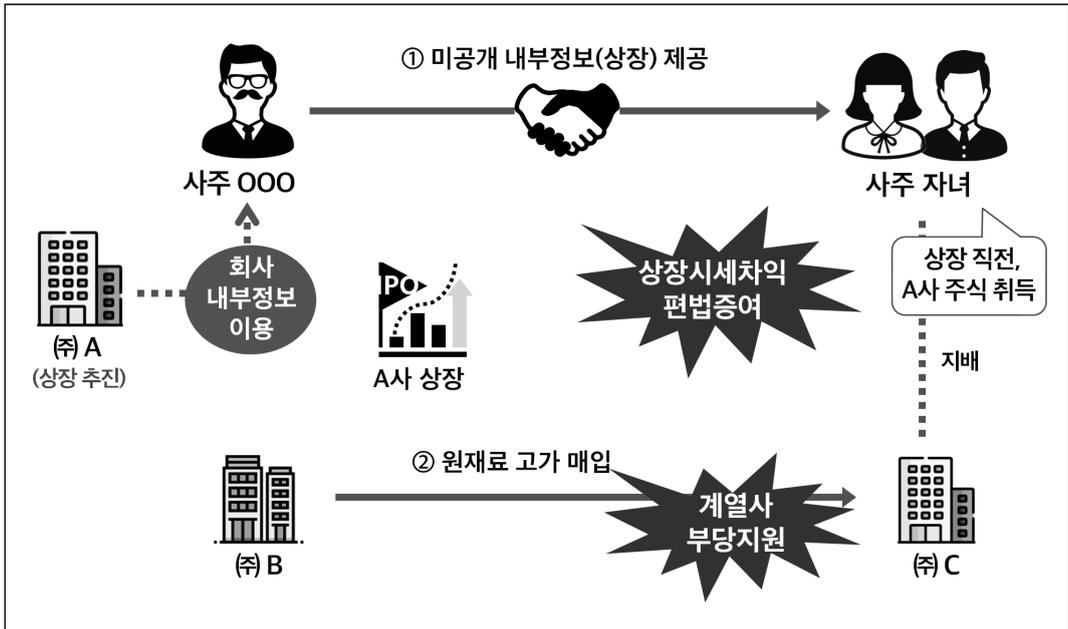
● 조사방향

-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제공한 통행세 및 사모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부당이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⑤]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가 계열사 상장 직전 자녀에게 동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상장차익을 변칙증여하고, 원재료 고가매입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이익 제공(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
 -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향유
-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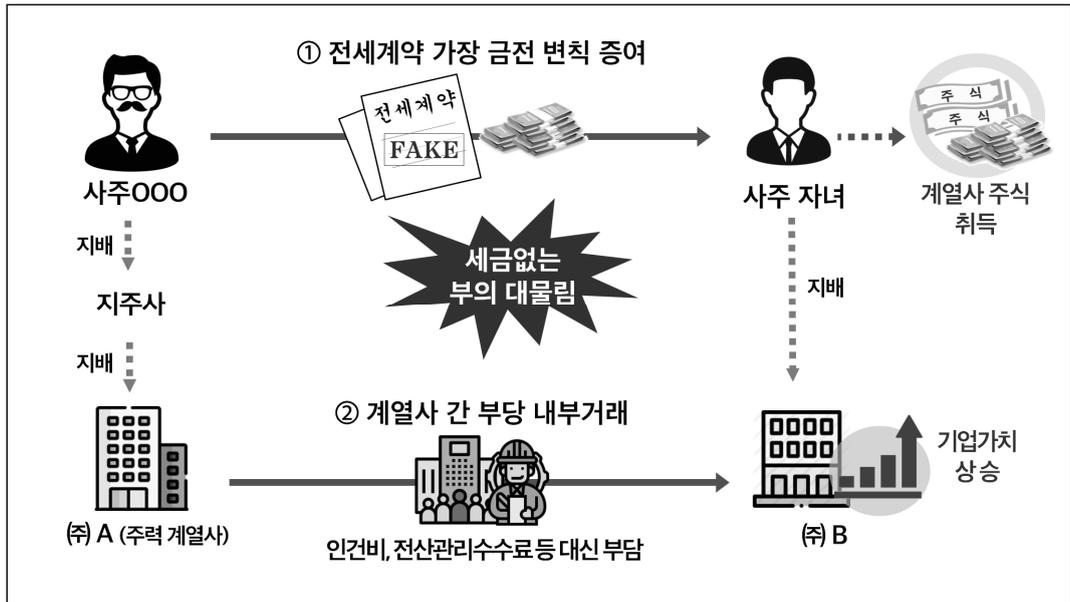
● 조사결과

-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억 원 및 계열사의 사주자녀 지배 C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례 ⑥]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가 주택임차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의 고액 자금을 변칙 증여하거나 자녀지배 회사에 인력지원 및 경비를 대신 부담하여 부당이익 제공(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무상 제공하고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
- 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동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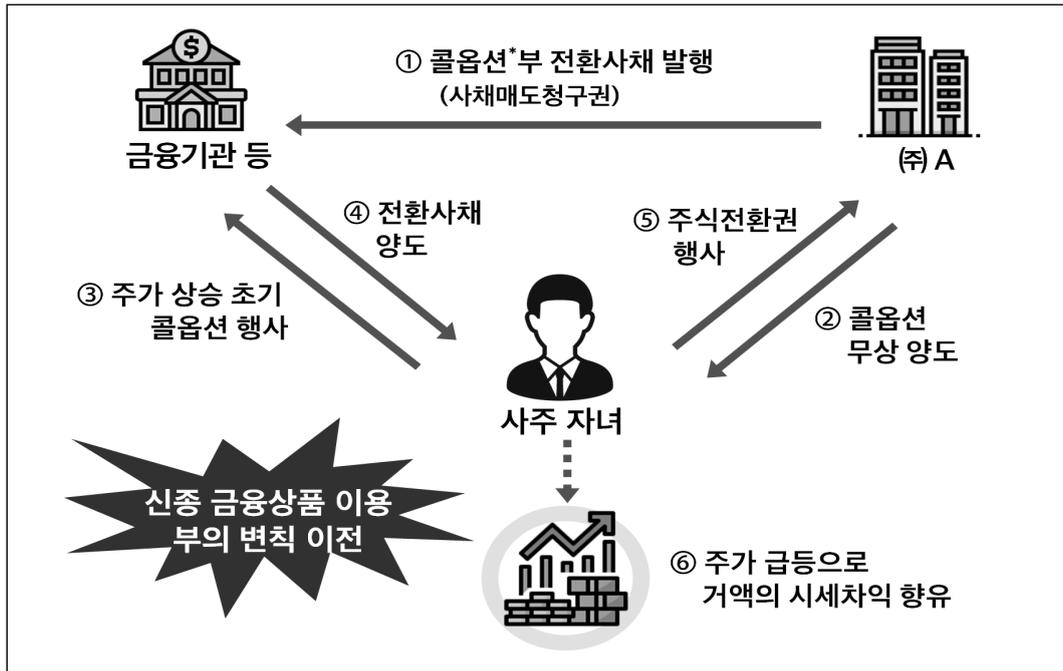
● 조사결과

-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0억 원 및 주력 계열사 A의 사주자녀 지배 B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례 ⑦] 중견기업 대기업탈세모방사례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주자녀는 콜옵션 행사 이후 주식 가치 상승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실현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
 -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

● 조사방향

- 사주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하기 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행사 이익을 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1. 11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은 총 195개로 전기 대비 10개 증가(신설)하였으며, 등록회계사(22,861명)의 56.9%(전기 대비 0.6%p ↑)가 회계법인 소속
- 회계법인 매출액은 4조 3,640억원으로 전기 대비 11.3% 증가 하였으며, 4대 법인의 매출 점유율(49.5%)은 전기(50.5%) 대비 다소 감소
 - 회계감사 1조 4,838억원(34.0%), 경영자문 1조 4,362억원(32.9%), 세무 1조 2,662억원(29.0%), 기타 1,778억원(4.1%) 順
- 등록회계법인이 감사(개별재무제표)한 회사 수는 16,527건으로 전체 회계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대비 1.6%p 증가(59.7%→61.3%)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기업,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법인 현황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내
 -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피투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하고자 회계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하여 공시

II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으로 '21.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그 외 법인(14개)은 '21.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

1 회계법인 일반현황

가. 회계법인 數 : 총 195개 (10개↑)

□ '21.3월말 현재 회계법인(금융위원회 등록)은 195개로 전기 대비 10개 증가*

* 신설 10개(오성, 청현, 서본, 더울, 세덕, 더함, 새두레, 중정, 태양, 해안)

□ 규모별로는 소속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대형법인)은 19개, 40~99명(중형 ")은 25개, 40명 미만(소형 ")은 151개로, 소형법인이 주로 증가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하 "등록법인")은 전기와 동일한 총 4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형(18개)과 중형(22개)에 분포

*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가 가능하며, 공인회계사 수는 40명(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요구

- 전기 중형이었던 2개 등록법인(삼도, 대성삼경)이 등록회계사수 증가로 대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 지속

○ 상장회사 감사인 미등록법인은 대형 1개, 중형 3개 및 소형 151개

〈소속 등록회계사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 FY18 | FY19 (A) | FY20 (B) | 전기대비 변동 (B-A) |
|-----|---------|------|-------------|-------------|------------------|
| 소속 | 100명 이상 | 14 | 17 | 19 (18) | 2 |
| 등록 | 40~99명 | 25 | 28 | 25 (22) | △3 |
| 회계사 | 40명 미만 | 143 | 140 | 151 (-) | 11 |
| 전체 | | 182 | 185 | 195 (40) | 10 |

* ()는 등록법인

나. 등록회계사 數 : 총 22,861명 (회계법인 소속은 13,004명, 비중 56.9%)

□ (등록회계사 분포) 등록회계사는 총 22,861명으로 전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56.9%인 13,004명으로 전기 대비 6.2% 증가

○ 등록법인 소속은 전체의 45.2%인 10,335명으로 전기(9,598명) 대비 증가하여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79.5%를 차지

○ 4대 회계법인 소속은 6,135명으로 전기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 비중은 47.2%로 소폭(△0.6%p) 하락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 구분 | FY2018 | | FY2019 | | FY2020 | | 전기대비 증감 | | |
|---------|--------|---------|--------|---------|--------|---------|---------|-----|--------|
|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 증감률 | 비중 증감 |
| 회계법인 소속 | 11,426 | 54.7 | 12,242 | 56.3 | 13,004 | 56.9 | 762 | 6.2 | 0.6 |
| 4대 법인 | 5,558 | (48.6*) | 5,849 | (47.8*) | 6,135 | (47.2*) | 286 | 4.9 | (△0.6) |
| 총 등록회계사 | 20,884 | 100.0 | 21,758 | 100.0 | 22,861 | 100.0 | 1,103 | 5.1 | - |

- *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4대 회계법인 모두 소속 등록회계사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삼정(10.1%↑)과 한영(7.3%↑)의 증가률이 높게 나타남

〈4대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 구분 | FY2019 | | FY2020 | | 전기대비 증감 | | |
|----|--------|-------|--------|------|---------|------|------|
|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 증감률 | 비중 |
| 삼일 | 2,165 | 37.0 | 2,198 | 35.8 | 33 | 1.5 | △1.2 |
| 삼정 | 1,675 | 28.6 | 1,845 | 30.1 | 170 | 10.1 | 1.5 |
| 한영 | 1,025 | 17.5 | 1,100 | 17.9 | 75 | 7.3 | 0.4 |
| 안진 | 984 | 16.8 | 992 | 16.2 | 8 | 0.8 | △0.6 |
| 합계 | 5,849 | 100.0 | 6,135 | 100 | 286 | 4.9 | - |

- (경력별 현황)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28.7%(3,737명)로 가장 많으며, 이 중 등록법인 소속은 65.4%, 4대 회계법인 소속은 18.1%임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57.3%)를 차지하는 반면, 4대 회계법인 외 중소형 회계법인은 11.2%의 비중

〈경력별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15년 | 15년이상 |
|-------------------|-----------------|-----------------|-----------------|-----------------|-----------------|-----------------|
|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수 | 1,070 | 1,765 | 1,447 | 2,750 | 2,235 | 3,737 |
| 등록법인 (비중*1) | 1,062 (99.3) | 1,701 (96.4) | 1,322 (91.4) | 2,228 (81.0) | 1,578 (70.6) | 2,444 (65.4) |
| 4대법인 (비중*1) | 997 (93.2) | 1,515 (85.8) | 1,002 (69.2) | 1,276 (46.4) | 669 (29.9) | 676 (18.1) |

| | | | | | | |
|--------------------|-------------|---------------|---------------|-----------------|-----------------|-----------------|
| 4대법인 외*2 (비중*1) | 73 (6.8) | 250 (14.2) | 445 (30.8) | 1,474 (53.6) | 1,566 (70.1) | 3,061 (81.9) |
| 경력별 구성비*3 | 8.2 | 13.6 | 11.1 | 21.1 | 17.2 | 28.7 |
| 등록법인 | 10.3 | 16.5 | 12.8 | 21.6 | 15.3 | 23.6 |
| 4대법인 | 16.3 | 24.7 | 16.3 | 20.8 | 10.9 | 11.0 |
| 4대법인 외*2 | 1.1 | 3.6 | 6.5 | 21.5 | 22.8 | 44.6 |

- *1 회계법인 소속 경력별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4대법인 및 그 외 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 *2 4대법인 외 등록법인 + 미등록 법인의 합산
- *3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총원 중 각 경력구간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 한편, 전체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는 1,051명이며, 4대 회계법인 소속은 709명(67%)으로 전기(1,039명, 96%) 대비 감소한 반면,
 -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 후 등록 가능
 -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에서 301명(대형 188명 + 중형 113명)이 실무수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구성 현황) 회계법인 소속 전체 등록회계사 중 이사의 비율은 25.5%로 전기(25.6%) 대비 감소(0.1%p ↓)
 - 등록법인은 통합관리체제로 조직화*됨에 이사비율(15.3%, 전기동일)이 미등록법인(65.0%, 전기대비 1.9%p ↑)과 차별화
 - * 등록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이사가 다수 소속회계사를 활용하여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 회계법인 소속 총인원*은 27,934명으로, 그 중 공인회계사(수습 포함)가 50.3%이고 공인회계사 외 인력은 49.7%로 비슷한 수준
 - * 등록, 수습회계사 외 변호사, 세무사, IT 전문가 등 전문가, 그 밖의 일반직원으로 구성
 - 특히 미등록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외 인력비중(69.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계법인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등록회계사 | | | | 수습 회계사 (C) | 총회계사 (수습포함) (D=A+C) | | 기타 인력 | | 총원 (F) |
|------------|--------|--------|------------|------|------------|---------------------|------|----------|------|--------|
| | (A) | 이사 (B) | 이사비율 (B/A) | 전기 | | 비중 (D/F) | (E) | 비중 (E/F) | | |
| 등록법인(40사) | 10,335 | 1,586 | 15.3 | 15.3 | 1,010 | 11,345 | 59.3 | 7,787 | 40.7 | 19,132 |
| 4대법인 | 6,135 | 450 | 7.3 | 6.9 | 709 | 6,844 | 61.3 | 4,324 | 38.7 | 11,168 |
| 4대법인외(36사) | 4,200 | 1,136 | 27.0 | 28.3 | 301 | 4,501 | 56.5 | 3,463 | 43.5 | 7,964 |
| 미등록법인 | 2,669 | 1,736 | 65.0 | 63.1 | 41 | 2,710 | 30.8 | 6,092 | 69.2 | 8,802 |
| 전체 회계법인 | 13,004 | 3,322 | 25.5 | 25.6 | 1,051 | 14,055 | 50.3 | 13,879 | 49.7 | 27,934 |



2 회계법인 영업현황

가. 전체 매출액 : 총 4조 3,640억원 (11.3%↑)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4조 3,640억원으로 전기(3조 9,226억원) 대비 4,414억원 (11.3%) 증가
 -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1조 4,838억원(34.0%), 경영자문 1조 4,362억원(32.9%), 세무 1조 2,662억원(29.0%), 기타 1,778억원(4.1%) 順
 - 회계감사부문 매출은 감사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1조 2,815억원) 대비 2,023억원 (15.8%) 증가
 - *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확대로 감사시간 증가
 - 특히,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의 회계감사부문 매출(5,419억원)이 전기(3,968억원) 대비 크게 증가(1,451억원, 36.6% ↑)
 - 경영자문부문 매출은 M&A 자문, 가치평가 용역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기(1조 3,137억원) 대비 1,225억원(9.3%) 증가
 -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매출(493억원)은 전기(540억원) 대비 감소(47억원, 8.7%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가 지속
 - 세무부문 매출은 이전가격, 조세 관련 자문 증가 등으로 전기(1조 1,518억원) 대비 1,144억원 증가
- 한편, 등록법인의 매출은 3조 3,239억원으로 회계법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2%이며, 회계감사와 경영자문 비중이 높음
 - * (업무별 점유율) 경영자문 88.2%, 감사 85.0%, 세무 57.4%, 기타 38.9%

나. 4대 회계법인의 매출액 비중 : 49.5% (1.0%p↓)

- 4대 회계법인 매출액은 2조 1,617억원으로 전기 대비 1,821억원(9.2%)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전기(50.5%) 대비 다소 감소
- 4대 회계법인의 업무별 매출 비중(점유율)은 세무부문(34.6%, 0.7%p ↑)은 증가한 반면, 회계감사(48.5%, 2.7%p ↓) 및 경영자문(69.9%, 1.1%p ↓) 부문은 감소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4대법인 점유율〉

(단위 : 억원, %, %p)

| 업무별 매출액 | FY2018 | | FY2019 | | FY2020 | | 전기대비 변동 |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A) | 비중 (a) | 금액 (B) | 비중 (b) | 금액 (B-A) | 증감률 (B/A-1) ×100 | 비중 (b-a) | |
| 전체 회계 법인 | 감 사 | 11,081 | 32.0 | 12,815 | 32.7 | 14,838 | 34.0 | 2,023 | 15.8 | 1.3 |
| | 세 무 | 10,535 | 30.4 | 11,518 | 29.4 | 12,662 | 29.0 | 1,144 | 9.9 | △0.4 |
| | 경영자문 | 11,209 | 32.3 | 13,137 | 33.5 | 14,362 | 32.9 | 1,225 | 9.3 | △0.6 |
| | 기 타 | 1,838 | 5.3 | 1,756 | 4.5 | 1,778 | 4.1 | 22 | 1.3 | △0.4 |
| | 합 계 | 34,663 | 100.0 | 39,226 | 100.0 | 43,640 | 100.0 | 4,414 | 11.3 | - |
| 4대 법인 | 감 사 (점유율)* | 5,554 (50.1) | 31.8 | 6,562 (51.2) | 33.1 | 7,193 (48.5) | 33.3 | 631 (△2.7) | 9.6 | 0.2 |
| | 세 무 (점유율)* | 3,672 (34.9) | 21.0 | 3,907 (33.9) | 19.7 | 4,383 (34.6) | 20.3 | 476 (0.7) | 12.2 | 0.6 |
| | 경영자문 (점유율)* | 8,255 (73.7) | 47.2 | 9,327 (71.0) | 47.1 | 10,040 (69.9) | 46.4 | 713 (△1.1) | 7.6 | △0.7 |
| | 기 타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점유율)* | 17,481 (50.4) | 100.0 | 19,796 (50.5) | 100.0 | 21,617 (49.5) | 100.0 | 1,821 | 9.2 | - |

*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4대 회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4대 회계법인 중 삼일의 매출 증가액(786억원)과 증가율(11.5%)이 가장 높고, M&A 자문, 가치평가 용역 등이 증가하여 경영자문 부문에서 큰 폭으로 성장
 - 업무별 매출 증가율은 회계감사부문은 안진, 세무부문은 삼정, 경영자문부문은 삼일이 가장 높게 증가

〈4대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감 사 | | | 세 무 | | | 경영자문 및 기타 | | | 합 계 | | |
|----|-------|-------|------|-------|-------|------|-----------|--------|------|--------|--------|------|
| | FY19 | FY20 | 증감률 | FY19 | FY20 | 증감률 | FY19 | FY20 | 증감률 | FY19 | FY20 | 증감률 |
| 삼일 | 2,361 | 2,489 | 5.4 | 1,852 | 2,019 | 9.0 | 2,635 | 3,126 | 18.6 | 6,847 | 7,633 | 11.5 |
| 삼정 | 1,773 | 1,947 | 9.8 | 824 | 965 | 17.2 | 3,018 | 3,290 | 9.0 | 5,615 | 6,202 | 10.5 |
| 한영 | 1,409 | 1,551 | 10.1 | 538 | 606 | 12.6 | 1,933 | 1,878 | △2.8 | 3,880 | 4,036 | 4.0 |
| 안진 | 1,020 | 1,207 | 18.3 | 693 | 793 | 14.5 | 1,741 | 1,746 | 0.3 | 3,454 | 3,746 | 8.5 |
| 합계 | 6,562 | 7,193 | 9.6 | 3,907 | 4,383 | 12.2 | 9,327 | 10,040 | 7.6 | 19,796 | 21,617 | 9.2 |



3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 195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中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임의감사 등 제외) 보고내용을 분석

가. 외부감사 수행실적 : 총 26,969건 (3.5%↓)

□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총 26,969건으로 전기보다 973건 감소**(3.5%↓)하였고,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가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 포함

** '20년 新외부감사법 본격 시행으로 SPC 외감제외, 외감대상 기준 상향(자산 120억 이상 등 → 2개 이상(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등으로 감소

○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은 총 4,240건으로 전기보다 133건 증가(3.2%↑)

□ 4대 회계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재무제표 3,907건, 연결재무제표 1,256건으로 각각 전기보다 83건(2.1%↓) 및 90건(6.7%↓) 감소

○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4대 회계법인 전체의 감사대상 회사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안진은 과거 대우조선해양관련 일부 직무정지('17.4월) 이후 감사대상회사가 회복** 중

* 삼일 △50사, 삼정 △35사, 한영 △39사, 안진 +41사

** 604사(FY19) → 645사(FY20)

□ 한편, 등록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 16,527건, 연결 3,638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3%, 85.8%로 전기(59.7%, 80.9%) 대비 증가

〈회계법인의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단위 : 건, %, %p)

| 구 분 | FY2018 | | FY2019 | | FY2020 | | 전기대비 증감 | | | | |
|-----------|--------|--------|--------|--------|--------|--------|---------|--------|------|--------|-------|
| | 전체 | 상장* | 전체 | 상장* | 전체 | 상장* | 전체 | | 상장* | | |
| | | | | | | | 증감률 | 증감률 | | | |
| 전 체 | 개별 | 28,907 | 2,238 | 27,942 | 2,310 | 26,969 | 2,398 | △973 | △3.5 | 88 | 3.8 |
| | 연결 | 3,874 | 1,676 | 4,107 | 1,754 | 4,240 | 1,822 | 133 | 3.2 | 68 | 3.9 |
| 4 대 회 법 인 | 개별 | 4,363 | 958 | 3,990 | 883 | 3,907 | 735 | △83 | △2.1 | △148 | △16.8 |
| | (점유율) | (15.1) | (42.8) | (14.3) | (38.2) | (14.5) | (30.7) | (0.2) | - | (△7.5) | - |
| 연 결 | 개별 | 1,456 | 797 | 1,346 | 747 | 1,256 | 634 | △90 | △6.7 | △113 | △15.1 |
| | (점유율) | (37.6) | (47.6) | (32.8) | (42.6) | (29.6) | (34.8) | (△3.2) | - | (△7.8) | -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나. 평균감사보수 : 등록 회계법인(22.5%↑)을 중심으로 상승(21.2%↑)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46.3백만원)*는 등록 회계법인(65.4백만

원, 22.5% ↑)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지속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29.0백만원(FY17) → 31.4백만원(FY18) → 38.2백만원(FY19) → 46.3백만원(FY20)

○ 이는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확대, 지정 회사수 증가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평균감사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기인

- 특히,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회계법인의 평균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감사투입시간 증가 효과와 전기보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감사하는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25.2백만원(FY19) → 35.6백만원(FY20)

** 감사대상회사 수는 12,620개로 전기(12,689개)와 유사하나, 자산규모 5백억원 미만 회사가 감소(△715개)하고, 5백억원 이상 회사가 증가(646개)

〈회계법인의 외감대상회사 평균감사보수 현황〉

| 구분 | FY18 | FY19 | FY20 | 증감률 |
|--------------|--------|--------|--------|-------|
| 외감법감사매출액(억원) | 9,083 | 10,669 | 12,487 | 17.0% |
| 등록법인 | 7,255 | 8,901 | 10,813 | 21.5% |
| 4대법인 | 4,797 | 5,702 | 6,326 | 10.9% |
| 감사실적 | 28,907 | 27,942 | 26,969 | △3.5% |
| 등록법인 | 16,176 | 16,679 | 16,527 | △0.9% |
| 4대법인 | 4,363 | 3,990 | 3,907 | △2.1% |
| 평균감사보수(백만원) | 31.4 | 38.2 | 46.3 | 21.2% |
| 등록법인 | 44.9 | 53.4 | 65.4 | 22.5% |
| 4대법인 | 109.9 | 143.0 | 161.9 | 13.2% |

4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가. 최근 3년간 소송현황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55건(대상 회계법인 22개)

○ 이 중 15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되어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한편, '20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총 124건*(대상 회계법인 18개, 소송가액 9,508억원)이며

* 대우조선해양(안진) 7,791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08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9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정, 안진) 84억원 등

○ 소송금액은 9,508억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관련 소송금액 중



가(808억원) 등으로 전기 대비 720억원 증가

〈회계법인 소송현황〉

(단위 : 천, 억원)

| 구 분 | | FY2018 | FY2019 | FY2020 | 3년누계 |
|--------|-----------------|--------|--------|--------|------|
| 종결 | 민사소송건수(피소종결건) | 22 | 16 | 17 | 55 |
| | - 패소(일부패소 포함) | 2 | 3 | 6 | 11 |
| | - 화해 등 | 3 | - | 1 | 4 |
| | - 승소(기각, 각하 포함) | 17 | 13 | 10 | 40 |
| 손해배상금액 | | 12 | 3 | 5 | 20 |
| 진행 | 소송건수 | 120 | 124 | 124 | |
| | 소송금액 | 7,786 | 8,788 | 9,508 | |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20사업연도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 2,987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1조 8,792억원(81.7%), 손해배상준비금 3,437억원(15.0%), 손해배상공동기금 758억원(3.3%)으로 구성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전기(2조 2,607억원) 대비 소폭(380억원, 1.7%) 증가
- 이는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이 1,359억원 증가하였으나, 4대 회계법인이 달러로 약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환율하락* 등으로 감소(1,325억원)한 것에 기인
- * 7.3% 하락 : '20.3월말 1,222.6원/달러 → '21.3월말 1,133.5원/달러

- 4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1조 7,758억원으로 전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3%이고, 등록법인 전체로는 2조 1,533억원으로 93.7%를 차지
- 감사보수 총액 대비 손해배상 준비재원 설정비율은 4대 회계법인은 280.7%*으로 그 외 등록법인(84.1%)**과 큰 차이를 보임

* (1조 7,758억원/6,326억원)*100 / ** (3,775억원/4,487억원)*100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FY2018 | FY2019 | FY2020 | 전기대비 | 증감률 |
|-----|----------|--------|--------|--------|------|------|
| 전체 | 손해배상책임보험 | 15,894 | 18,854 | 18,792 | △62 | △0.3 |
| | 손해배상준비금 | 2,769 | 3,080 | 3,437 | 357 | 11.6 |

| | | | | | | |
|------------------|---------------|--------------|--------------|--------------|--------|------|
| | 손해배상공동기금 | 607 | 673 | 758 | 85 | 12.6 |
| | 합 계 | 19,270 | 22,607 | 22,987 | 380 | 1.7 |
| 4 대 법 인 | 손해배상책임보험(비중)* | 14,244(89.6) | 17,357(92.1) | 16,032(85.3) | △1,325 | △7.6 |
| | 손해배상준비금(비중)* | 1,371(49.5) | 1,535(49.8) | 1,677(48.8) | 142 | 9.3 |
| | 손해배상공동기금(비중)* | 53(8.7) | 52(7.7) | 50(6.6) | △2 | △3.8 |
| | 합 계(비중)* | 15,668(81.3) | 18,944(83.8) | 17,758(77.3) | △1,186 | △6.3 |

* 전체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5 기타 정보

※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사업연도로부터 이사보수,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신규 공시사항 확대

가. 이사 보수 : 5억원 이상 총 91명

- 2020사업연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는 23개 회계법인 소속 총 91명으로, 이 중 4대 회계법인이 58명(63.7%)
 - 전체 회계법인의 5억원 이상 이사보수 평균은 약 8.1억원이며, 삼일이 36명으로 최다 인원을 공시

〈5억원 이상 이사보수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분 | 등록 회계법인 | | | | | 기타 등록법인 | 미등록 법인 | 합계 |
|-------------|---------|-------|------|------|-------|------------|-----------|-------|
| | 4대 회계법인 | | | | | | | |
| | 삼일 | 삼정 | 한영 | 안진 | 소계 | | | |
| 인원 (법인수) | 36 | 11 | 6 | 5 | 58 | 24(11) | 9(8) | 91 |
| 총액 | 284.0 | 114.5 | 50.3 | 38.7 | 487.5 | 174.7 | 73.1 | 735.3 |
| 평균 | 7.9 | 10.4 | 8.4 | 7.7 | 8.4 | 7.3 | 8.1 | 8.1 |

나. 품질관리 예산 : 약 3%

- 등록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예산 비중*은 평균 3.2%이며, 이중 4대 회계법인의 예산 비중은 평균 3.6%
 - *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
 - 전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예산은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담당직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1~3% 수준



III

시사점

- ①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등록법인의 시장영향력 확대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회계법인간 합병, 인력증원을 통해 등록법인이 대형화·조직화되었으며,
 - 등록법인의 감사매출액, 감사대상 회사, 소속 공인회계사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등록법인의 시장 영향력 확대
 - * 감사매출액 비중 : 78.4%(FY18) → 82.2%(FY19) → 85.0%(FY20)
 - 감사대상 회사 비중 : 56.0%(FY18) → 59.7%(FY19) → 61.3%(FY20)
 - 소속 공인회계사 비중+ : 75.6%(FY18) → 78.4%(FY19) → 79.5%(FY20)
 - +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중 등록법인 소속 회계사의 비중
 - 감독당국은 등록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 등록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② 4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수 감소 추세
 - 4대 회계법인 경우 감사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사대상 회사규모**는 대형화 추세
 - * 4,363사(FY18) → 3,990사(FY19) → 3,907사(FY20)
 - ** 2020사업연도의 경우 전기보다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증가(36사)한 반면 그 미만인 회사는 감소(119사)
 -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 높은 감사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
- ③ 경영자문 등 비감사 부분에 대한 리스크 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경영자문 매출비중이 회계감사 매출비중을 상회**
 - * 1조 1,209억원(FY18) →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 등록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 38.1%, 회계감사 매출비중 37.9%
 -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에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역 수임시 위험평가, 심리실시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 ④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관리체계 강화 필요
 - 4대 회계법인 인력수급 등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경우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의 수습회계사 채용 증가*
 - * 4대 회계법인 제외 등록법인의 수습회계사, 비중 : 37명, 3.4%(FY19) → 301명, 28.6%(FY20)
 - 수습회계사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상급자의 지도 및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